

UNCED 이후의 국제환경동향

■ 자료제공 : 환경처 ■

I. UNCED 개최경위 및 의의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생태계 파괴 및 생물종의 감소, 사막화 등 지구환경파괴의 심각성을 공감한 국제사회는 각종 국제환경협약을 체결 또는 체결 추진 중

-몬트리올의정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협약(바젤협약), 런던뎀핑협약 등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스톡홀름)의 개최 20주년을 기념하여 1992. 6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178개국 정부대표가 모인 가운데 유엔 환경개발회의(UNCED)가 개최됨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를 근본이념으로 정립

-향후 지구환경 질서의 기본원칙이 될 “리우선언”과 그 실천계획으로서 21세기 지구환경보전 강령인 “의제 21(Agenda 21)”을 채택

-기후변화협약 및 생물다양성협약 채택

○지구환경문제는 동서냉전의 퇴조와 함께 향후 새로운 국제질서 편성의 새로운 이념적 규범으로 대두되는 한편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새로운 남북문제로 등장

-최근 각종 국제협약 및 각국의 입법예, 정책 등의 추세에 따라 지구 환경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질적, 적극적 참여 요구 증대

-한편, 지구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무역규제 등 통상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도 더욱 커질 전망

II. UNCED 이후 주요 후속조치 추진상황

1. 「지속개발위원회(CSD)」 설치 및 추진현황

○조직

-이사국은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선출 53개국 대표로 구성(임기 1-3년)

〈지속개발위원회〉

○21세기 지구환경보전 강령인 「의제 21」의 추진상황 평가 및 촉진을 위해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에 설치키로 합의 ('92. 11 제47차 유엔총회)

○'93. 2. 24-26 CSD 발족회의(Organizational Session)를 개최하여 위원회 운영, 실무그룹 구성 방법, N-GO(비정부기관)의 참여방법 등을 논의

○주요기능은 Agenda 21, 각종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이행상황 평가 촉진과 대개도국 기술이전, 재정지원 관련사항 촉진 감독 등임

-뉴욕에 사무국을 두며, 케냐 나이로비와 스위스 제네바에 연락 사무소를 설치

○우리나라와의 관계

-중국, 일본등과 함께 CSD 아시아지역 이사국으로 피선('93. 2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환경외교” 기반 확보

○향후대책

-CSD가 향후 국제사회에서 지구환경문제에 대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감안, CSD 관련회의에 적극 참여, 우리의 입장 반영(CSD 1차 본회의 : '93. 6. 14-25 뉴욕 유엔본부)

-CSD 논의과정에서 쟁점으로 부상될 재정지원, 기술이전 문제등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 국제환경협상에서 적극적 역할 수행

2. 기후변화협약 추진현황

〈기후변화협약〉

○대기중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여 지구온난화현상을 막기 위한 협약으로서 '92. 6월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됨

* 지구온난화는 대기중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등 온실가스의 증가로 지구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으로 해수면 상승, 기상이변, 농업, 생태계 피해 야기

○협약 주요내용

-각국은 기후변화를 방지하는 전략 및 계획의 수립 시행

-선진국은 CO₂ 배출량을 '90년 수준으로 억제토록 노력

-군소도서 및 저지대국가, 산유국 및 에너지과다 소비국 등 특별고려

-선진국은 개도국이 협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 및 기술지원

○가입등 향후전망

-'93. 3 현재 160개국 서명, 미국 등 16개국 비준(50개국 비준시 발효)

-향후 구체적 규제기준 설정과 정책의 강화를 위해 협약개정이나 부속의정서 협상이 개시될 전망

○우리나라와의 관계

-협약상으로는 온실가스 규제일정이 포함되지 않았고, 특별고려(제2조 제6항) 등이 있어 단기적인 영향은 적을 것임

-향후 부속의정서 협상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에너지정책, 물가 등 경제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

○향후대책

-미·일등 각국동향 고려, '93년중 가입시기 결정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소비절약 등을 위한 기술 개발 촉진

-에너지 의존도가 낮고 부가가치가 높은 성장유망 산업 중점 육성

-장기에너지 수급조정, 원자력, LNG 등 비중확대, CO₂ 배출감소유도

3. 생물다양성협약 추진현황

〈생물다양성협약〉

○생물종 감소 방지와 생물자원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협약으로서 '92.6월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됨
* 지구상의 생물종은 연간 2만-5만종 감종된다고 보고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생물종의 감소는 지구유전 자원의 손실 및 생태계 불안정화 의미

○협약 주요내용

-국가별 생물자원에 대한 자주적 권리 인정
-생물다양성 보전과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전략수립

및 보고

-자국내 생물다양성 분포상황의 조사및 목록작성, 유지의무

-생물자원 보유국과 이를 이용한 기술개발국과의 이익 공유

○가입 등 향후전망

-'93년 4월 현재 160개국 서명, 캐나다등 15개국이 비준서를 기탁

-다수국가가 협약내용을 수용할 국내법을 시행하고 있어 머지않아 발효 전망(비준시 발효)

○우리나라와의 관계

-협약내용에 구체적인 규제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후속의정서 협상이 완료되기까지는 단기적인 영향은 적을 것임

-각국이 협약시행에 대비 경제적 가치있는 유전자원 보전방안을 강화하고 불법유출 방지조치를 취할것 이므로 농·축산업, 의약업 등 관련 산업 파급 예상

-장기적으로 초보단계에 있는 우리의 생명공학산업육성에 장애요인이 될 우려가 있고 유전공학적인 안전성 등을 이유로 무역거래 제약 예상

○향후대책

-미·일 등 각국 동향 고려, '94년중 가입추진
-국내 생물자원 조사, 목록작성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 추진

-협약의 내용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해 국내법규 및 행정제도 정비추진

Ⅲ. 기타 주요 국제협약 관련사항

○지구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체결된 국제환경 협약은 현재 약 160여개이며, 주요한 협약들로는 몬트리올 의정서, 바젤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런던뎀핑협약(LDC) 등임

1.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가. 개 요

○오존층 파괴물질인 CFCs 등에 대한 생산 및 사용 규제에 관한 협약으로 '87. 9. 16 채택, '89. 1. 1 발효 ('93. 4월 현재 기본 의정서에는 107개국, 제1차 개정 의정서에는 49개국 가입)

○기본의정서 주요내용
-CFC-11, Halon 등 총 8종을 규제물질로 지정, 2000년부터 사용을 금지

나. 진행현황

○제1차 개정 : '90.6 몬트리올 의정서 제2차 가입국 회의(런던)

-CFC-111, 메틸클로로포름 등 총 12종을 신규 오존층 파괴물질로 추가, 2000년부터 사용금지(메틸클로로포름은 2005년부터)

○제2차 개정 : '92. 11 몬트리올 의정서 제4차 가입국회의(코펜하겐)

-CFC등 기존 규제물질 20종의 사용금지시기를 현행 2000-2005년에서 '94-'96년으로 대폭 단축

-HCFCs, 메틸브로마이드 등 75종을 규제대상물질에 추가(총 95종)

* 한국을 포함한 개도국은 위와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의정서 규제대상물질(8종)및 제1차 개정시 추가된 규제대상물질(12종)에 대하여는 2005년까지 연간 국민 1인당 0.3kg, 0.2kg 범위내에서 각각 사용 가능 (제2차 개정시 추가된 75종 물질에 대한 개발국의 규제일정은 '95년도에 결정할 예정임)

다. 우리나라와의 관계

○기본의정서에 '92. 5. 27. 제1차 개정의정서에

93. 3. 10부터 가입

○몬트리올 의정서 제1차 및 제2차 개정시에 추가된 오존층 파괴물질 87종(1차 : 12종, 2차 : 75종)은 국내 수요가 적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음

○그러나 기본의정서 규제물질 CFC-11, Halon 등 8종은 국내의 전자, 자동차, 가전제품 제조업체에서 발포용, 세정용, 냉매용 등으로 대량 사용

-금년도 위 8종물질에 대한 국내 수요량은 3만 5천 톤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공급량이 수요량의 30% 수준에 머물고 있어 국내 관련업체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CFCs 자동차 냉매용으로 사용하는 CFC-12의 경우 생산자의 도매 가격은 kg당 4,300원 수준이나 일부 품귀현상으로 최종 소비자는 kg당 2만원이상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

라. 향후대책

CFCs 공급 축소에 따라 관련업계에서는 비싼 대체

물질을 수입 또는 효율이 떨어지는 다른 물질사용등 대책을 강구중임

○자동차 냉매용 CFC-12의 경우 금년도 공급물량 1,300여톤을 성수기인 6월 전후에 전량 공급하고, 업계 및 관련부처와 협조하여 가격관리 강화

○아울러 폐냉장고, 자동차, 에어컨 등에 포함된 CFCs 회수 재이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 추진중임

○한편 울산화학·KIST 등에서는 프레온가스 대체물질 개발에 성공하여 일부는 '95년부터 상업적으로 생산·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2. 바젤협약

가. 개요

○선진공업국이 폐기물의 밀수출 매각 및 이들 유해 폐기물의 부적정처리로 인한 환경 오염이 국제문제화됨에 따라 '89. 3월 채택됨

○주요내용

-유해중금속 함유 폐기물(수은, 카드뮴)등 총 47종을 규제대상물질로 정하고, 이들 물질의 국경간 이동을 금지

-가입국과 비가입국간의 유해폐기물 수출입 금지

나. 진행현황
○'92. 5. 5 호주가 20번째로 가입함에 따라 발효되었으며, '92. 12말 현재 35개국 가입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 일본이 '93년 하반기에 가입할 예정으로 있음

다. 우리나라와의 관계

○'93년 하반기중 미국·일본과 연계 가입 추진

○가입국과 비가입국의 유해폐기물의 수출입 금지 및 가입국의 수출입시 사전동의가 필요하는등 수출입 절차가 까다로워짐

-선진국으로부터 일부 폐기물(재생용 플라스틱 등)을 수입, 재활용 원자재로 활용('91년의 경우 15억 불 수입)중으로 파급효과 예상

라. 향후대책

○'92. 12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입에 대비, 국내대책 마련

○동 협약에 가입한후, 고철, 폐지 등을 규제대상물질에서 제외시켜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대외협상 강화

3.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가. 개 요

○범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와 상거래를 규제, 야생 동·식물 및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으로서 1973. 3채택, 1975. 7 발효

—규제대상 야생동·식물을 멸종위기정도에 따라 부속서 I, II, III으로 구분하고 차등규제

나. 진행현황

'93. 5 현재 우리나라 및 예멘등을 제외하고 119개국 가입

○코볼소 뿐 불법거래국인 대만에 대하여 유럽 및 미국의 환경단체들이 TV 등을 통하여 대만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93. 5 CITES 사무총장 방한, 우리나라의 CITES 가입준비 현황 파악

다. 우리나라와의 관계

○CITES에 가입시 부속서 I에 명시된 야생 동식물 524종에 대하여는 상업적 거래가 금지, 부속서 II, III에 명시된 야생동식물 492종의 수출 입시 수출국 정부의 수출허가서 및 원산지 증명서 필요

○이에따라 사향, 옹담, 호골 등 한약재 원료 교역 및 모피관련 사업에 큰 영향 예상

라. 향후대책

○'93. 7월 가입방침(지구환경대책기획단 결정: '92.12)

○CITES 수용을 위해 자연환경보전법등 국내법 제 정비 추진중

○코볼소 뿐 불법유통 단속강화 및 대외홍보 추진

4.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런던뎀핑협약; LDC)

가. 개 요

○육상에 기인한 폐기물의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1972년 UN 인간환경회의시 82개국 대표가 참석, "런던뎀핑협약 채택", '93. 4 현재 70개국 가입

○해양환경의 중요성, 국제법의 원칙에 따른 적절 환경관리인. 1993. 7

한 정책, 해양투기 금지물질 및 투기시 특별허가시 고려할 사항을 규정

나. 진행현황

○각국의 특별허가 또는 일반허가로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어 발효후에도 많은 폐기물이 해양에 배출

○그러나, 최근 해양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부각됨에 따라 '90. 10 제13차 LDC 당사국회의에서 '96년부터 산업폐기물의 해양배출중지를 결의

다. 우리나라와의 관계

○'93. 9월 가입추진

○현재 비가입되어 있어 국내 외적 이미지 손상이 우려되고 최근 러시아 핵폐기물 동해투기등 인접국가와의 분쟁 발생시 대응논리 미약

○협약에 가입시 폐기물의 해양배출 제한이 따르게 됨

라. 향후대책

○LDC에 대한 가입시의 각종 파급효과를 고려 해양오염방지법, 원자력법등 관련법규의 정비 준비중

IV. 주요국가및 국제기구의 동향

○미국, EC등 주요 선진국은 자국의 높은 환경기술을 배경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OECD등 국제기구도 환경문제와 무역의 상호관계에 대한 인식 증진 등 환경문제에 광범위하게 관여

1. 최근의 주요국가 동향

가. 미 국

○클린턴 행정부는 환경보호가 경제성장에 부담을 주기 보다는 자국의 높은 환경청정기술을 바탕으로 환경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진보적인 입장을 표명

○또한 미국내 환경보전을 위해 에너지세 도입등 적극적 대책 강구

—원자력, 석탄, 석유 등 거의 모든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세의 부과를 골자로 한 정부안을 확정('93. 3), '94. 7 시행 예정

나. 일 본

○최근 일본은 월등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환경문제에 적극개입,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외교적 노력

을 강화하고 있음

-ECO ASIA(아시아 태평양 환경회의 : 장관급) 개최, IGC(국제녹십자)창설회의 등 각종 국제환경회의 유치, 개최추진

다. 유럽공동체(EC)

○최근 EC역내국민들의 쾌적한 환경욕구에 적극부응, 「EC정책의 환경화(Greening of EC Policy)」로 대표되는 환경정책추진

-이를 위해 '93. 3월과 4월에 “환경이사회” 및 “환경에너지 합동이사회”를 개최, 에너지세 도입등의 환경정책을 논의

* EC의 에너지세 도입은 현재까지 영국의 반대로 합의되지 않았으나, 미·일등의 입법동향 등을 감안할때, 향후 EC도 이를 도입할 것으로 예측

2. 주요 국제기구의 동향

가. UNEP(UN 환경계획)

○최근UNCED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한 기능 강화등의 노력을 추진중

○특히 UNCED합의에 따른 CSD(지속개발위원회)가 설립됨에 따라 UNEP와 CSD간의 관계정립, 기능재배분등 논의중(제17차 집행이사회 : '93. 5. 10-21)

○매년 6월 5일 개최되는 “세계환경의 날 행사”(World Environment Day)를 금년에는 중국 북경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금년주제는 “가난과 환경; 그 악순환의 단절”임

○최근의 OECD 주요활동 분야는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의 조화 방안, 환경지표에 관한 연구, 산성비 피해대책등에 관한 정보제공 등임

* OECD의 환경정책에 대한 권고등은 국제환경협약으로 발전되는 경향이 강함

○특히 “무역 환경합동회의”를 개최 “무역과 환경의 양립성 제고를 위한 지침”을 작성, 상호 부정적 효과의 최소화를 추구

○우리나라의 OECD 가입 추진

-'96년이후 우리나라의 OECD 가입계획에 따라 현재 환경처는 OECD 환경위원회에 옵저버 가입을 신청중이며, '93. 6 개최된 OECD 환경위원회에서 옵저버

가입이 결정됨

-환경처는 당차 공무원을 OECD 환경국에 파견('92-),, 정보수집등 OECD 가입에 대비중임

V. 우리나라의 대응 기본방향

〈전정부적 협력〉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환경동향에 신속히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구환경관계장관 대책회의 및 지구환경실무회의(차관급), 지구환경대책기획단(국장급)등 지구환경 특별대책기구를 구성, 환경, 산업, 협상대책등 3개 분야 44개 세부대책 과제로 구성된 지구환경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음.

〈정보수집의 강화〉

○이를 기초로하여 CSD 이사국으로서의 지위를 활용하여 미국, 일본, EC등 주요국가의 환경정책 동향에 대한 정보수집과 UNEP, OECD, GATT등 주요 국제기구에서의 환경논의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있음.

〈능동적 환경외교 전개〉

○국제환경협상에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나 개도국의 어느 입장에도 속하기 어려운 선발개도국의 특수한 상황으로 정부는 우리나라의 여건과 향후 파급효과 분석을 토대로 국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사안별 국제환경협력 논의에 참여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환경외교를 전개할 계획임

〈장기적인 산업개편〉

○또한 장기적으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규제가 제도화될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 환경적합형으로 조정(전환)할 계획임

※ CFC 등 규제일정 단축현황(선진국 기준)

	기본의정서	현행(1차 개정)	조정(2차 개정)	기준
CFCs (5종)	'93.7부터 20% 삭감	'95.1.1부터 50% 삭감	'94.1.1부터 75% 삭감	'86
	'98.7부터 50% 삭감	'97.1.1부터 85% 삭감	'96.1.1부터 100% 삭감	
	2000.1부터 100% 삭감	2000.1.1부터 100% 삭감		
Halon (3종)	"	'92.1.1부터 동결	'94.1.1부터 75% 삭감	"
	"	'95.1.1부터 50% 삭감		
	"	2000.1부터 100% 삭감		
기타 CFC (10종)	없음	'93.1.1부터 20% 삭감	'94.1.1부터 75% 삭감	'89
		'97.1.1부터 85% 삭감	'96.1.1부터 100% 삭감	
		2000.1부터 100% 삭감		
사염화탄소	"	'95.1.1부터 85% 삭감	'95.1.1부터 85% 삭감	"
		2000.1부터 100% 삭감	'96.1.1부터 100% 삭감	
메틸클로로 포름	"	'93.1.1부터 동결	'94.1.1부터 50% 삭감	"
	"	'95.1.1부터 30% 삭감	'96.1.1.부터 100% 삭감	
	"	2000.1.1부터 70% 삭감		
		2005.1부터 100% 삭감		
HCFCs (40종)	"	○과도물질을 자율규제대상	'96.1.1부터 동결	"
			2004.1.1부터 35% 삭감	
			2010.1.1부터 65% 삭감	
			2030.1.1부터 100% 삭감	
HBFCs (3종)	"	○없음	'96.1.1부터 생산 및 소비금지	"
메틸브로 마이드	"	○없음	'95부터 '91수준 동결	"
			'95년 삭감일정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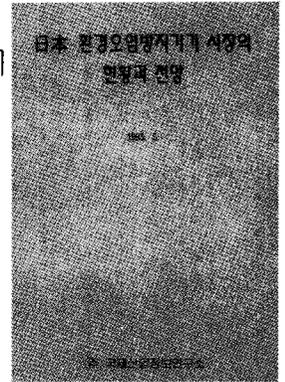
*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 분류, 상기 CFC 5종, Halon 3종에 대해 2005년까지 1인당 0.3kg, 기타 CFC, 사염화탄소, 메틸클로로포름은 0.2kg까지 사용가능하고 HCFC, HBFC, 메틸브로마이드에 대해서는 '95년 결정 예정

※ CFC 등 대체물질 개발현황

개발대상	용도	개발기간 및 주관기관	개발목표	개발현황
HFC-134a	냉매용	'91-'95 (KIST)	○'95. 12월 까지 상업화 공장기본 설계 완성	○합성 연구에 성 공 ○현재 Pilot test 중(당초 목표보다 조기 실행 추진)
HCFC-141b/142b	발포 및 세정용	'91-'95 (울산 화학)	○'94. 12월 까지 공장건설 완료	○'91. 12월 실험 실 연구완료 ○'92. 8월 Pilot plant(톤/일) 건 설 완료
HFC-152a	냉매 및 발포용	'91-'95 (KIST)	"	○자료조사 및 실험 실 연구중
HCFC-123 /124/125	냉매 및 세정용	'91-'95 (KIST)	"	"

시간안내

▶ 일본환경오염방지기기 시장의 현황과 전망



- (株)국제산업정보연구소 발행
- 정가 150,000원, 134쪽

- 제1장 주요 환경문제의 현황
- 제2장 환경오염방지 기술개발 현황
- 제3장 환경오염방지기기 시장 현황
- 제4장 환경오염방지기기 메이커 개발 동향 및 전망

사원모집

당사는 환경관련 약품 및 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로서 '93년도 사업확장에 따라 성실하고 의욕적인 인재를 아래와 같이 공개 채용합니다.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부 문 인 원	응 시 자 격	공 통 사 항
영업경력 및 남○명 간부후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졸 영업경력 3년이상인자 • 환경약품 영업경력자우대 • 환경관련학과 출신자 우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외여행 무결격자 2. 병역필 및 면제자 3. 운전 경력자

2. 제출서류

- 자필이력서(사진첨부 및 우측상단 전화번호 기재)1통
- 자기소개서

3. 전형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4. 접수기간

- 1993. 7. 15~1993. 7. 31(우편접수 가능)

5.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2 한림빌딩 301호
- 문의전화(대)561-3210

(株) 高道綜合環境